

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1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7. 9. .

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1. 개정이유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의 개정('16.3.29.) 및 시행('17.3.30.)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,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조례상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공인을 새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(안 별지 제2호 서식)

3. 개정조례(안) : 붙임

4. 신·구 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: 붙임

6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없음

가. 예고기간 : 2017. 7. 3. ~ 7. 24.까지 (경상북도 공고 제2017-993호)

나. 예고방법 : 도보 및 경상북도 홈페이지

7. 관련부서 협의

- 예산관련 : 별도조치 없음[예산담당관실-6615(2017.6.20.)]
 -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: 붙임
-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 [감사관실-8651(2017.6.26.)]
-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 [여성가족정책관실-16022(2017.6.26.)]
-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 [혁신법무담당관-6370(2017.6.19.)]

경상북도 조례 제 호

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 별지 제2호서식 】

공 인 대 장

공 인 명					
종 류	☐ 청인 ☐ 직인 ☐ 특수공인	관리부서			
☐ 등록 · ☐ 재등록 공인	(인 영)	등 록 일 (재 등 록 일)	년 월 일		
		새 긴 날	년 월 일		
		새 긴 사 람	주 소 : 성 명 및 상호 : 생년월일 :		
		최초사용일	년 월 일		
		재 료			
		등록(재등록) 사 유			
		도 보 공 고	년 월 일 공고 제 - 호		
		비 고			
폐 기 공 인	(인 영)	등 록 일 (재 등 록 일)	년 월 일		
		폐 기 일 (분 실 일)	년 월 일		
		폐 기 사 유	☐ 마멸 ☐ 분실 ☐ 기타()		
		폐 기 방 법	☐ 소각 ☐ 이관 ☐ 기타()		
		폐 기 자 (분 실 자)	소 속 : 직 급 : 성 명 :		
		도 보 공 고	년 월 일 공고 제 - 호		
		비 고			
※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. ※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	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개정안			
공인대장							
공인명							
종류		☐ 청인 ☐ 직인 ☐ 특수공인 ☐ 관리부서					
☐ 등록 · ☐ 재등록공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년 월 일				
		새긴날	년 월 일				
		새긴사람	주소 : 성명 및 상호 : 주민등록번호 :				
		최초사용일	년 월 일				
		재료					
		등록(재등록) 사유					
		도보공고	년 월 일 공고 제 - 호				
		비고					
폐기공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년 월 일				
		폐기일 (분실일)	년 월 일				
		폐기사유	☐ 마멸 ☐ 분실 ☐ 기타()				
		폐기방법	☐ 소각 ☐ 이관 ☐ 기타()				
		폐기자 (분실자)	소속 : 직급 : 성명 :				
		도보공고	년 월 일 공고 제 - 호				
		비고					
		※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. ※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					
공인대장							
공인명							
종류		☐ 청인 ☐ 직인 ☐ 특수공인 ☐ 관리부서					
☐ 등록 · ☐ 재등록공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년 월 일				
		새긴날	년 월 일				
		새긴사람	주소 : 성명 및 상호 : 생년월일 :				
		최초사용일	년 월 일				
		재료					
		등록(재등록) 사유					
		도보공고	년 월 일 공고 제 - 호				
		비고					
폐기공인	(인영)	등록일 (재등록일)	년 월 일				
		폐기일 (분실일)	년 월 일				
		폐기사유	☐ 마멸 ☐ 분실 ☐ 기타()				
		폐기방법	☐ 소각 ☐ 이관 ☐ 기타()				
		폐기자 (분실자)	소속 : 직급 : 성명 :				
		도보공고	년 월 일 공고 제 - 호				
		비고					
		※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,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. ※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.					

관 련 법 령 발 취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(이하 “고유식별정보”라 한다)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

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
경상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본 조례 개정안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의 개정 및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됨에 따라,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조례상의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수반 사항이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하고 있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, 추가비용수반사항이 없어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4. 작성자

-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지홍(☎054-880-2866)